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00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국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가 반복되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사회·경제적 과장이 커지고 있으나,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금융위원회는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미국, 홍콩, 영국 등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 활발한 상품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9조제3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 ----- ----- 투 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29조¹⁾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집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합투자재산의 주(主) 운용대상에 따라 ①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③ 인프라(SOC)·선박 등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④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⑤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소위 “MMF(Money Market Funds)”)로 구분하고 있음.

□ 이 중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특별자산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으로 법령에 따라 특정 유형으로 제한되지 않으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선박, 인프라(SOC), 엔터테인먼트, 아트, 탄소(배출권), 우주&항공, 상품, 사업수익권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표1] 특별자산 분류 예시

구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동향
선박	일반투자자 공모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자금 등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에서 차입금과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
인프라(SOC)	사회간접시설 개발사업에 투자 * 다만, 인프라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주식고·저편입형의 섹터펀드로 분류
엔터테인먼트	각종 공연(영화, 드라마, 음반, 뮤지컬 등)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에 투자
아트	아트관련 수익권에 투자
탄소(배출권)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팔아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펀드
우주&항공	우주&항공 산업 관련 수익권에 투자
상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광산물·에너지 등 상품 투자 ☒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예. 와인펀드)
사업수익권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카목의 정의에 따른 ‘사업수익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에 투자

(자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 한편,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와 같은 가상자산 연계 금융상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Traded Fund, 이하 “ETF”)는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거래소에서 상장·거래

되는 펀드를 의미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는 ETF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는 ETF를 의미함.²⁾

- 캐나다가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미국(2024. 1.), 홍콩(2024. 4.), 영국(2024. 5.)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였음.

[표2]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동향

구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동향
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허용 ○ SEC는 2024년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승인 하였으며, 2024년 7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홍콩	○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2024년 4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영국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2024년 5월 비트코인 현물 ETN과 이더리움 현물 ETN을 승인 (기관투자자 한정 승인)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김재환,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비트코인 현물 ETF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8(2), 2025., p.280.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인 “특별자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가상 자산 현물 ETF와 같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허용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와 같은 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품의 출시를 통하여 인프라 선진화, 시장 접근성 개선, 신규 투자 기회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함.³⁾

- 또한, 제도권 시장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이 거래될 경우 규제당국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현·선물 가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 반면, 가상자산 관련 펀드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3) 정보성,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자본시장포커스(2024-09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4.

4) 이보미,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금융브리프(33-13)」, 한국금융연구원, 2024. 6.

시장 간의 연계에 따른 위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⁵⁾

-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허용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운용하거나 중개, 투자하게 되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여 전통 자산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자본 일부가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문에서 가상자산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특별자산펀드의 형태로 허용하려는 것이나,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② 환매가 허용될 것, ③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을 ETF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⁶⁾

5) 이보미,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금융브리프(33-13)」, 한국금융연구원, 2024. 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런데, 현행법 제4조제10항은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기초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함으로써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는 개정안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전면 허용되는 경우, 금융·가상자산시장 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자금이동에 따른 실물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117호, 2025. 6. 27.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경제 영향, 투자자 보호 등이 우려되는 바,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정비,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국회 논의 등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
